

■ 교육

UC 편입 프로그램 'TAG' 어바인 등 6개 캠퍼스 지원 가능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UC계 대학을 선호한다. 그런데 UC계 대학은 편입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다. 편입은 커뮤니티칼리지(CC)를 통해서 하는 경우와 4년제 대학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UC 계열로의 편입은 CC가 더 유리하다. UCLA의 경우 CC에서 받아들이는 인원이 92%, 4년제 대학에서 받는 비율이 8%다. 압도적으로 CC 학생 비율이 높다.

UC계로 편입하는 데는 TAG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을 준다. TAG는 매년 11월에 있는 일반 지원보다 2개월이나 빠른 9월에 지원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UC의 모든 캠퍼스가 TAG를 통한 편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TAG는 Transfer Admission Guarantee의 줄임말로 UC 중 6개의 캠퍼스 (Davis, Irvine, Santa Barbara, Santa Cruz, Riverside, Merced)에서 제공하는 편입 보장 제도이다.

TAG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커뮤니티칼리지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 당시 적어도 UC의 편입 인정 학점을 30 학점 이상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아울러 각 학교별, 전공별로 제시하고 있는 GPA 하한선을 넘어서야 한다.

참고로 UC어바인의 경우 GPA 3.4 점, 데이비스는 3.3, 샌타바버라 3.2, 샌타크루즈 3.0, 리버사이드 3.0-3.2, 머세드 2.8 - 3.0를 요구한다. 일부 학생들은 빠르면 1년 만에 편입 허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경우도 있다.

TAG 승인이 나더라도 해당 캠퍼스나 전공에서 요구하는 최소 학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편입을 할

수 없으니, 학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TAG는 학교마다, 또 전공마다 학생에게 요구하는 룰이 다르니 해당 웹사이트(uctap.universityofcalifornia.edu)에 있는 플래너 섹션으로 들어가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고등학교 때 이수한 AP/IB 수업의 성적도 기입이 가능하며, 학점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몇몇 전공은 TAG를 통해 편입학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바인 캠퍼스의 간호사 프로그램, 또는 샌타바버라 공과대학은 TAG를 통한 편입학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데이비스는 모든 전공을 TAG를 통해 편입할 수 있게 오픈해 놓았다. 모든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지원서는 9월 1~30일 사이에 제출하면 된다. TAG가 제공되는 6개의 UC 캠퍼스 중에 오직 한 곳만 지원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UC 데이비스 TAG에 승인되더라도 11월 일반 지원에서 Irvine이나, Santa Cruz 등 다른 UC 캠퍼스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한 학교들 중 본인이 가장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TAG 지원과 상관없이 11월에 있는 일반 지원에는 원하는 UC 캠퍼스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C 데이비스에 TAG로 지원해 합격했다 입학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11월 일반 지원에서 어바인이나, 샌타크루즈 등 다른 UC 캠퍼스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복수의 학교에 합격했다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 법률 칼럼

Public Charge (공적 부조)와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

작년 10월 이민국에서 공적부조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내내 추진해 오던 복지 수혜 혜택을 받아온 이민자에 대한 행정명령이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두 달 간의 의견 수렴 기간 후 확정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발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적 부조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은 단순히 메디케어 등의 복지혜택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공적 부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 라는 절차를 통해 크게 일곱 가지의 판단 기준을 세워서 이민국의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이민자가 그 기준 중 몇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강화해준 또 다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 갑론을박이 많았던 오바마 케어와 ETIC (Eamed Income Tax Credit), 그리고 미국 시민권 아이가 받았던 메디케어나 WIC같은 공적부조는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받았던 공적부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적 부조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최근 12개월 동안 \$1,821: 15% of Federal Poverty Guideline (FPG) for a household of ONE) 미만의 수령액 또는 최근 3년 내에 12개월 미만으로 등록되었던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I-944라는 새로운 form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 에 관련된 내용이 기입될 종합적인 양식

입니다. 이민국이 이 새로운 test를 통해 가장 관심을 갖는 중요한 몇 가지를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1) 이민 신청자의 나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직업이 없다면 불리해집니다)

2)이민 신청자의 고용 여부 (직업이 없거나 앞으로도 고용되기 힘들 것 같은 분들은 불리해집니다)

3) 이민 신청자의 재산 (최소 FPG의 125%)

4)이민 신청자의 고용에 문제가 없었던 영어 능력 (이제 시민권뿐만 아니라 영주권 진행에서도 기본적인 영어 능력은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입니다.

즉, 앞으로의 영주권 발급은 미국에서 고용이 되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민자에게만 주겠다는 의지가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어가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도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는 Joint sponsor에 대해서 심사 강도가 크게 강화됩니다. 그동안 Joint sponsor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기만 하면, 혈연관계가 없는 친구나 지인이라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민자와의 실제 관계를 엄밀히 따져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민자를 대신해 정부에게 보상을 해 줄 만한 관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Sponsor나 Joint Sponsor의 소득금액이 최소 FPG의 250% 정도는 되어야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그레이스 성형외과

아름답고 자신있는 나를 찾는 곳



코(미용) 성형

입술 주름

얼굴(안면) 리프팅 (실리프팅)

눈가 주름 처진 눈 리프팅

보톡스 필러

목 리프팅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IRVINE (949)409-8850

16300 Sand Canyon Ave. #1011, Irvine, CA 92618

NORTHRIDGE (747)203-7750

17114 Devonshire St. #101, Northridge, CA 91325

www.drgracekimaustin.com

@drgracekimaustin